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8나43271 판결 [보증금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8나4327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4 선고 2016가단526070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허성국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범

변론 종결 2019. 1. 23.

판결 선고 2019. 2. 20.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4. 선고 2016가단526070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갑 제2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면 제11행부터 제16행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1) D은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5.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과 2011. 11. 11.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받았는데, C이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변제하지 않자,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2) 원고는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16. 8. 26.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제2, 3순위로 합계 180,000,000원(= 2009. 7. 5.자 근저당권에 기한 120,000,000원 + 2011. 11. 11.자 근저당권에 기한 60,000,000원)을 배당받았다(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

(3) 피고는 2016. 9. 1. 이 사건 배당금 중 일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05437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4. 6.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액 1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의무발생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석문

판사이원호

판사신동호